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제747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사관리 규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학사지원과) 02-970-6033

제정	2012. 3. 1.	개정	2012. 11. 19.	개정	2012. 12. 31.
개정	2013. 2. 28.	개정	2013. 7. 3.	개정	2013. 10. 14.
개정	2014. 2. 12.	개정	2014. 5. 19.	개정	2014. 9. 4.
개정	2015. 3. 13.	개정	2015. 10. 23.	개정	2016. 11. 17.
개정	2017. 3. 3.	학칙개정	2017. 7. 3.	개정	2017. 12. 6.
개정	2018. 2. 20.	개정	2018. 9. 4.	개정	2019. 2. 15.
개정	2019. 10. 7.	개정	2020. 5. 20.	개정	2020. 9. 4.
개정	2020. 12. 30.	개정	2021. 2. 25.	개정	2021. 6. 1.
개정	2021. 10. 1.	개정	2022. 4. 28.	개정	2022. 5. 27.
전부개정	2022. 9. 1.	개정	2023. 2. 20.	개정	2023. 5. 12.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에 따라 학사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사운영은 법령 및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이나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2장 수업

제1절 수업시간표

- 제3조(수업시간표 편성) ① 교무처장은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시간표 편성을 주관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의·조정하여 편성한다.
 - 1. 교양교육과정: 교양대학장
 - 2. 전공교육과정: 단과대학장
 - 3. 기초필수 및 기타 교육과정: 해당 교과목 운영 부서장
 - ② 교무처장은 매 학기 수업시간표를 수강신청 시작 5일 이전에 공고하여야한다.
 - ③ 공고된 수업시간표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해야할 경우에는 해당 학과에서 교무처로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수업 시간) 수업 시간의 단위는 "교시"로 하며, 교시별 수업시간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강의시간 배정) ① 전임교원의 강의시간은 주당 4일 이상 및 1일 학습구분당 4시간 이하(대학원 수업 제외)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시수를 감면받는 교원 및 교과목 특성에 따라 강의를 분산하여 편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강사의 강의시간은 주당 6시간 이내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 교과목 등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당 9시간까지 배정할 수 있다.

- 제6조(강의계획서) 교과목 담당교원은 교과목 개요, 교육목표, 평가방법, 주차별 강의계획 등이 기재된 강의계획서를 해당 학기 수강신청기간 7일 전까지 통합 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7조(폐강) ① 강좌별 수강신청 인원에 따른 폐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양강좌 주간 20명 미만
 - 2. 교양강좌 야간 15명 미만
 - 3. 교양강좌 외국어 회화·작문 15명 미만
 - 4. 기초필수 강좌 20명 미만 (신설 2023. 5. 12.)
 - 5. 전공강좌 12명(최종학년의 경우 10명) 미만
 - 6. 영어(모듈)전용 전공강좌 10명(최종학년의 경우 8명) 미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
 - 1. 현장실습, 봉사활동, 교직교과목 등의 강좌
 - 2. 해당학년의 학습구분별 재학생이 20명 미만인 강좌
 - 3. 야간과정이 폐지된 학과(부)에서 개설한 야간 강좌
 - 4. 그 밖에 과목 특성에 따라 총장이 인정하는 강좌 (신설 2023. 2. 20.)

제2절 수업관리

- 제8조(수업관리 성실의무) ① 교과목 담당 교원은 본 규정에 따른 수업기간 준수, 출결 관리. 휴강·결강 및 보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교무처장, 단과대학장, 학과(부)장은 엄정한 학사관리를 위해 제1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관리 및 인정) ① 교과목 담당 교원은 수업 시작 시 학생의 출결을 점검하여야 한다.
 - ② 수업 시작 후 출석은 지각으로 처리하고, 3회의 지각은 1회의 결석으로 환산한다.
 - ③ 유고결석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④ 제3항에 해당하는 유고결석 사유과 그 밖에 출석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따로 정한다.
- 제10조(휴강·결강과 보강) ① 교과목 담당 교원은 학기 중에 휴강 또는 결강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강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1. (삭제 2023. 5. 12.)
 - 2. (삭제 2023. 5. 12.)
 - 3. (삭제 2023. 5. 12.)
 - ② 제1항에 따라 휴강 또는 결강을 하려는 교과목 담당교원은 사전에 휴강 또는 결강 및 보강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고, 당해 학기 중 에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
 - ③ 교과목 담당교원은 보강 실시 후 7일 이내에 보강 이행 확인 및 결과보고서를 생성하여야 한다.
 - ④ 단과대학장은 매월 소속 교원의 보강 이행 확인 및 결과보고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교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교과목 담당교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고나 조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

- 우 휴강 또는 결강 이후에 단과대학장의 사후승인을 거쳐 해당 정보를 통합 정보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의 업 적평가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제11조(강의평가) ① 해당 학기 중 개설한 모든 교과목을 대상으로 강의평가를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강의평가는 매 학기말에 해당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강의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수강인원이 5명 미만인 강좌
 - 2. 그 밖에 과목 특성에 따라 총장이 인정하는 강좌
 - ④ 평가결과는 강의개선 및 각종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⑤ 강의평가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절 수강신청

- 제12조(수강신청 절차) ① 학생은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교육과정표와 수업 시간표에 따라 학과(부)장 및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 여야 한다.
 - ② 수강신청은 같은 학습구분에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4조에 따르는 경우에는 학습구분을 달리하여 수강 신청할 수 있다.
- 제13조(수강신청 기준학점) ① 매 학기 최대 수강학점은 19학점으로 하며, 매 학

년도 수강학점은 37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학점을 초과할 수 있다.
- 1. 외국대학에서 우리대학으로 파견된 외국인 교환학생: 매학기 최대 수강학점 은 21학점
- 2. 국내외 대학과의 공동운영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 매 학년도 45학점 범 위 내에서 매 학기 최대 수강학점은 23학점
- 3.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 3.75 이상인 학생: 매 학기당 3학점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매 학년도 수강학점은 4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1. 교과과정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가. 계절학기 또는 디스커버리학기 개설 강좌
 - 나. 취창업 진로설계
 - 다. 현장실습
 - 라. 봉사활동
 - 마. K-MOOC 강좌
 - 바. 국내 학점교류 협약대학에서 개설한 강좌
 - 사. 학생군사교육단의 군사학과목
- 2.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 3.75 이상인 경우
- 제14조(수강신청 최소학점) ① 재학생은 학기당 최소 1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하여 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환학생의 해외 파견대학에서의 수강신청 최소학점

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5조(수강신청 교과목의 순서) ① 선·후수로 지정된 교과목은 순서에 맞추어수강신청하여야 한다.
 - ② 취득하지 못한 필수 교과목은 우선적으로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 제16조(동일교과목 중복 수강금지) 재수강 신청 교과목이 아닌 동일교과목을 중복하여 신청하고 취득한 학점은 졸업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17조(직계존속 개설교과 수강금지) ① 학생은 직계존속이 개설한 교과목을 수 강할 수 없으나, 직계존속이 단독으로 필수 교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학과(부)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대체 또는 유사교과목으로 지정하여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 1. 본교의 다른 학과 등에서 개설한 교과목
 - 2. 다른 대학에서 개설한 교과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직계존속이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단과대학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교과목의 학점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교원은 업적평가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제18조(재수강 교과목의 수강신청)** ① 기존 이수교과목 중 성적이 C⁺ 이하인 교과 목은 재수강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재수강하여 취득할 수 있는 최고 성적은 A° 이하로 한다.
 - ③ 필수교과목을 낙제(F학점)한 경우에는 반드시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여 야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수교과목이 폐지된 경우 필수교과목에서 제외하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1. 학과(부)에서 지정한 동일교과목
- 2. 학과(부)에서 지정한 유사대체교과목
- ⑤ 재수강 교과목을 수강신청할 경우에는 종전의 성적을 취득한 연도 및 학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⑥ 재수강의 허용범위, 성적 산정 및 표기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9조(복학·재입학·편입학생의 수강신청) ① 복학·재입학한 학생의 수강신청은 복학·재입학 당시 교육과정에 따라 수강 신청한다.
 - ② 편입학생의 수강신청은 편입학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에 따라 신청한다. 다만, 학과(부)에서 이수를 요구하는 교과목은 예외로 한다.
- 제20조(수강신청의 제한) ① 타 학과(부)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공 교과목은 매학기 주간은 9학점, 야간은 3학점을 초과하여 수강 신청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1. 복수전공 및 부전공, 공동운영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학생
 - 2. 타 학과(부) 전공 인정 교과목을 이수중인 학생
 - 3. 연계융합전공 및 학생설계전공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학생
 - 4. 야간교육과정이 폐지된 학과(부)의 학생
 - ③ 교양선택의 체육영역 교과목은 재학 중 취득학점 6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수 없다.
- 제21조(수강신청 교과목의 변경) ① 수강신청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 기간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 제38조제1항의 교과별 수업일수에 따라 개설되

는 교과목의 수강 변경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 제22조(수강신청 교과목의 철회) ① 수강신청 교과목을 철회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업일수 3분의 2선 이내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해당 교과목 수강을 철회할 수 있다.
 - ② 수강신청 교과목을 철회한 경우에는 다른 교과목으로 대신 수강 신청할 수 없으며, 철회 후 1개 교과목 이상 수강신청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 제38조제1항의 교과별 수업일수에 따라 개설되는 교과목의 철회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제4절 학습구분변경

- 제23조(구분) ① 학습구분변경이란 주간에서 야간으로, 야간에서 주간으로 수업 형태를 변경하여 학습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입학 당시 학적은 그대로 유지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학습구분변경은 전체 교과목 변경과 일부 교과목 변경으로 구분한다.
- 제24조(변경대상 및 허가) ① 전체 교과목 변경은 야간 모집단위가 폐지된 학과 에 재학중인 입학당시 야간 학적 학생에게 허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개시전 정해진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학습구분변경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학과(부)에 제출하여 하며, 학과(부)는 학과(부)회의 심의를 마치고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일부 교과목 변경은 매 학기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 학기 정해진기가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한 학생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야간 모집단위가 폐지된 학과(부)의 학생에게는 변경 학점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구분변경 허가신청을 마치지 않고 학습구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 1. 계절학기 또는 디스커버리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 2. 수강인원이 강좌개설 기준에 부족하여 합 · 폐강으로 조정 운영하는 경우
- 3. 직전학기(계절학기 또는 디스커버리 학기 제외)에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3.75 이상인 경우(초과학점만 해당됨)
- 4. 비동일계 편입생으로 선 이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나, 같은 학습구분에서 해당 학년의 교과목과 중복된 경우
- 5. 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한 경우

제5절 계절학기 및 디스커버리학기

- 제25조(개설시기 및 기간) ① 계절학기는 하계 및 동계방학 기간에 개설하고, 디스커버리학기는 하계방학기간에 개설한다.
- ② 개설기간은 계절학기는 3주 이상, 디스커버리학기는 7주 이상으로 한다.
- ③ 수업시간은 1학점당 15시간(실험, 실습 교과목은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 제26조(개설교과목) ① 계절학기 및 디스커버리학기에 개설할 수 있는 강좌 교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계절학기 개설교과목(개설 직전 정규학기 교과목 해당)

- 가. 학과(부)에서 개설 요청한 교과목(야간 교과목 포함)
- 나. 외국어자격시험 대체 교양교과목
- 2. 디스커버리학기 개설교과목은 교육과정통합위원회에서 지정한 교과목
- ② 교과목별 수강인원이 20명 미만인 강좌는 개설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상 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27조(수강학점) 계절학기 및 디스커버리학기의 수강신청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계절학기에 운영하는 군사학 실습 교과목의 수강신청 학점은 학기당 1학점, 최대 3학점 이내로 한다. (단서 신설 2023. 5. 12.)
- 제28조(성적평가) ① 계절학기 성적은 정규학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② 디스커버리학기 성적은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제29조(학점인정) ① 졸업 직전 계절학기에 수강 신청한 현장실습, 인턴십 교과 목은 학점취득 해당 학기 수료 또는 졸업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② 졸업 직전 디스커버리학기에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학점취득 해당 학기수료 또는 졸업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장 부전공 및 복수전공

- 제30조(이수자격)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은 2학년부터 할 수 있다.
- 제31조(이수신청 및 허가) ① 부전공이나 복수전공 이수신청 허가는 재학 중 각각 한 차례만 가능하다.
 - ② 학칙 제54조에 따라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성적처리가 종료된 후 정해진 기간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부전공이나 복수전공 이수신청을 접수한 학과(부)는 신청 학생의 수학능력과 학과(부)의 수용범위를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교무처로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승인된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의 학과(부)는 변경할 수 없다.
- 제32조(허용인원) 복수전공 이수 학생의 허용인원은 해당 학년도 학과(부) 정원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 제33조(이수학점) ①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학과 (부)에서 지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되, 이수해야 하는 전공 이수학점 다음 각호와 같다.
 - 1. 부전공: 본전공 54학점, 부전공 21학점(편입생은 본전공 32학점과 부전공 21학점)
 - 2. 복수전공: 본전공과 복수전공 각각 39학점(편입생은 각각 32학점)
 - ②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의 교육과정 적용은 허가 학년도의 교육과정으로 하고, 복수전공의 경우 해당 학과(부)에 편성된 교육과정 중 전공필수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복수전공의 경우 신 교육과정에 전공필수로 신설되는 교과목은 구 교육과정을 적용받은 학생에게는 이수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한다.
- 제34조(학점인정) ①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지정된 교과목이 전공 학과(부)의 교과목과 중복 시에는 본 전공 학과(부) 교과목으로만 인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수전공의 경우 유사학과 계열공통교과목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하여 9학점 이내에서 본전공 및 복수전공 취득학점으로 중복하여

인정하되, 졸업학점으로는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전공의 경우 부전공으로 지정된 교과목이 부족할 때에는 부전공 학과(부)에서 지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복수전공에서 부전공으로 전환할 경우 제2항에 따라 계열공통교과목으로 중복인정받은 학점은 부전공 이수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⑤ 부전공 이수학점을 졸업할 때까지 취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을 졸업에 필요한 타 학과(부) 교과목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 제35조(이수연한 및 학위수여) ① 부전공 이수자는 졸업 전에 부전공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부전공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본 전공 학위만 수여한다.
 - ② 복수전공의 이수연한은 복수전공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때까지로 하며, 졸업 전에 복수전공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본 전공 학위수여를 유보한다.
- 제36조(취소신청) ① 부전공이나 복수전공 이수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초 2개월 이내에 정해진 기간 동안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복수전공을 취소할 때에는 취득한 복수전공 학점은 부전공 또는 타 학과(부)의 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장 시험과 성적

제1절 시험

- 제37조(시험) ① 학칙 제61조에 따른 정기시험은 학기말에 실시하며, 수시시험은 교과목 담당교수의 책임 아래 수업기간 중 수시로 실시한다.
 - ②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업시간에 평가방법을 학생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③ 제1항의 시험의 관리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38조(추가시험) ① 학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교과목 담당교수는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학생에게 성적입력 마감일 전까지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추가시험은 별도의 평가방법으로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 제39조(부정행위 학생의 처리) 시험 감독관은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학생을 발견한 즉시 학생처장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부정행위를 한 학생의 해당 교과목 성적은 "F"로 처리한다.

제2절 성적

- 제40조(상대평가) ① 학칙 제62조에 따른 교과목 강좌별 성적평가는 성적등급 비율 또는 최대허용평점평균 중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② 교과목 강좌별 성적등급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A+: 10퍼센트 이하
 - 2. A° 이상: 30퍼센트 이하
 - 3. B⁺ 이상: 50퍼센트 이하
 - 4. B° 이상: 70퍼센트 이하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적등 급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

- 1. 영어전용 전공교과목 강좌
- 2. 교육과정의 최종학년 전공교과목 강좌
- 3. (삭제 2023. 2. 20.)
- 4. 창업지원단에서 운영하는 교과목 중 교육과정통합위원회에서 지정한 창업 관련 강좌
- 5. 디스커버리학기 개설강좌
- 6. 수강인원이 10명 미만 강좌 (신설 2023. 5. 12.)
- ④ 제3항에 해당하는 강좌의 성적등급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A+: 20퍼센트 이하
- 2. A° 이상: 40퍼센트 이하
- 3. B⁺ 이상: 60퍼센트 이하
- 4. B° 이상: 80퍼센트 이하
- ⑤ 제1항에 따른 최대평점평균을 제한한 최대허용평점평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2항의 성적등급 비율을 고려한 교과목 강좌별 최대허용평점평균은 3.30점
- 2. 제3항의 성적등급 비율을 고려한 교과목 강좌별 최대허용평점평균은 3.50점 다만, 영어전용 전공교과목 강좌는 3.60점
-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평점평균 산출은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수에 평점을 곱한 평점합계를 신청학점(철회 교과목 제외) 합계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백분위 점수로 환산할 때에는 별표 2의 성 적평점환산 기준표를 적용한다.
- ⑦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경우에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등급 비율 및 최 대허용 평점평균을 달리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제41조(절대평가) ① 교육과정 운영상 절대평가를 할 수 있는 교과목 강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순수 실습 및 졸업논문 연구지도 강좌
 - 2. 국내외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강좌
 - 3.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강좌
 - 4. 교양필수 교과목 중 고급반 강좌
 - 5. 교직 교과교육영역 전공 강좌
 - 6. "S" (합격)나 "U" (불합격)으로 평가하는 강좌
 - 7. 수강인원이 5명 미만 강좌 (신설 2023. 5. 12.)
 - 8.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좌
 - ②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학생 및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교환학생의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강좌의 상대평가 학생수는 절대평가한 외국인학생수를 제외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학기에 개설된 모든 교과목에 대하여절대평가로 평가할 수 있다.
- 제42조(성적처리)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정해진 성적입력 기간에 성적을 통합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성적 정정기간에 성적을 정정하여야 한다.
 - ②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학생이 수강하고 있는 교과목을 철회한 경우, 해당 학생의 철회 교과목 성적란에 "W"로 표기하며, 철회한 학생을 성적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 제43조(군복무 휴학생의 성적 인정) ① 수업일수 3분의 2선 이후에 군복무를 사

유로 휴학하는 학생이 해당 학기 성적 취득을 원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군입대 휴학생 성적인정원에 따라 교과목 담당교수와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 은 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성적 부여는 휴학 전에 실시한 평가의 평균 성적으로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 제38조제1항의 교과별 수업일수에 따라 개설되는 교과목을 이수하는 군복무 휴학생의 성적인정을 위한 수업일수 적용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 제44조(성적의 정정)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입력 및 정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성적을 정정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기 종 강일 이후 3주 이내에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 1. 성적 전산입력 과정 등에서 착오가 있는 경우
 - 2. 성적입력 기간에 성적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 ③ 성적정정에 대한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45조(자수강 성적삭제) 재수강에 따른 이전 성적은 삭제되며, 삭제 시기는 수업 일수 4분의 3선으로 한다.
- 제46조(성적평가자료 보존) ① 교과목 담당교원 및 소속 학과(부)장은 출석부, 성적 평가 보조전표를 해당 학기 종강일 이후 3주 이내에 통합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 ② 총장은 출석부, 성적평가 보조전표 보관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점검 결과를 학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제47조(학점의 인정시기)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48조(학사경고 처리) ① 학칙 제63조에 따라 매 학기(계절학기 및 디스커버리학기 제외) 학사경고를 받는 학생의 학사경고 사실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린다. ② 학사경고자 학사지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학적관리

제1절 휴학·복학·자퇴

- 제49조(휴학) ① 학칙 제42조에 따라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휴학신청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병역휴학: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 2. 질병휴학: 4주 이상의 의사진단서
 - 3. 육아휴학: 9세 이하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4. 임신·출산휴학(본인 및 배우자): 임신·출산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5. 창업휴학: 창업 대표자 및 창업교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한 자로서 창업 동아리 선정 이후 당해연도 최종평가를 완료한 자 또는 협약 기간 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된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 제출
 - 가. 창업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나. 창업동아리 활동자: 창업지원단에서 발급한 창업교과목 및 창업동아리 활동 이수증
 - 다. 정부재정지원사업 선정자: 창업지원단에서 발급한 창업교과목 이수증 및 정부재정지원사업 선정 확인증

- 6.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 휴학사유서, 관계 증명서
- ② 휴학신청 시기는 매 학기 등록기간으로 하되, 등록기간 이후의 휴학신청은 질병, 군복무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 ③ 신·편입생과 재입학생은 입학한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 질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불가피한 경우 에는 허가할 수 있다.
- ④ 학칙 제4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신·출산·육아의 휴학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2개 학기(여학생은 6개 학기) 이내로, 창업 휴학기간은 최대 4개 학기 이내로 한다.
- 제50조(복학) ① 학칙 제43조에 따라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 간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복학은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입대 휴학한 학생의 경우 병역 복무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어도 매 학기수업일수 4분의 3 이상 출석이 가능한 학생은 복학할 수 있다.
- 제51조(자퇴) ① 학칙 제47조에 따라 자퇴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3호서식 의 자퇴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당해연도 신입학 및 편입학자의 경우 학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학기가 개시된 경우라도, 학칙 제31조제3항의 입학일 이전에 본교에 합격한 자가 등록을 포기한 경우 전항에 따른 자퇴가 아닌 등록포기자로 처리한다.

제2절 재입학

제52조(재입학 자격) 재입학 신청 자격은 자퇴나 제적된 사람으로 한다. 다만, 학사

제적된 사람의 재입학 신청은 학사제적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할 수 있다.

- 제53조(재입학 절차) ① 학칙 제49조에 따라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재입학 신청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과(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재입학 신청원 1부 (별지 제4호서식)
 - 2.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군복무 중 제적된 사람에 한함)
 - ② 학과(부)는 학과(부) 회의의 재입학 심의 결과를 소속 단과대학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에는 국제교류처와 입학요건 등을 사전에 혐의하여야 한다.
- 제54조(재입학 허가) ① 재입학은 학과(부)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총장이 허가한다.
 - ② 재입학은 재입학 허가 학년도를 기준으로 주간 및 야간 총정원의 범위에서 허가하며, 교원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허가한다.
 - ③ 재입학은 재적 당시의 소속 학과(부)의 동일한 학습구분과 학년으로 허가한다.
 - ④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총장은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55조(재입학 학점인정) 재입학생이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은 "F" 학점을 포함 하여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개편으로 폐지된 교과목 학점인정 여부는 학과(부)회의에서 정한다.
- 제56조(등록) 재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57조(재입학 취소 및 제한) ① 재입학생이 제55조에 따른 학점인정을 동의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학칙 제88조에 따라 제적된 사람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3절 전과(부)

제58조(전과(부) 자격) ① 전과(부)는 2학년 이상인 학생이 할 수 있다.

- ② 학칙 제55조에 따라 전과(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시작 전 정해진 기간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전과신청을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전과(부) 허가원을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전과(부) 신청자격에 소속 학과(부) 전공 교과목 이수 여부를 학과(부)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전공 교과목 개수는 1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공 교과목 개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2개 이내로 한다.

제59조(전과(부) 허가) ① 전출 및 전입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출: 해당 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퍼센트 이내
- 2. 전입: 해당 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내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이 30명 이하인 학과(부) 또는 전공은 3명까지 전출을 허용할 수 있다.
- ③ 전과(부) 허가는 전입 학과(부)의 심의를 마친 후 총장이 허가한다.
- ④ 전과(부) 신청 학생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성적순에 따라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선발 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 ⑤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폐지된 학과(부)의 학생에게는 전입하려는 학과(부)에 전과(부)를 허가할 수 있다.
- ⑥ 학칙 제88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과, 재입학생은 전부(과)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 제60조(전과(부) 학점인정) 전과(부)가 허가된 학생의 학점인정은 해당 학과(부) 회의에서 인정하는 교과목으로 하며, 학과(부)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학점인정 교과목 현황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학적부 관리 및 제증명

- 제61조(학적부 관리) ① 학적부는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전산 관리한다.
 - ② 학적부는 보관 책임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없다.
- 제62조(학적부 기록) 학적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다.
 - 1. 학생 및 보호자 인적 사항
 - 2. 성적 및 학적변동 사항
 - 3. 상벌에 관한 사항
- 제63조(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① 학적부 기재사항을 정정하려는 자는 정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와 전화번호, 영문이름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이 직접 정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변경사유 기재된 것)

- 2.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변경사항 기재된 것)
- 제64조(증명서 종류 및 발급) ① 본교에 재적 중인 학생 또는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증명서를 발급한다.
 - 1. 재학증명서
 - 2. 휴학증명서
 - 3. 제적증명서
 - 4. 수료증명서
 - 5. 졸업(예정)증명서
 - 6. 성적증명서
 - 7. 학적부
 - 8. 교육비납입증명서
 - 9. 교직과정이수(예정)증명서
 - 10. 장학금 수혜 및 비수혜 확인서
 - 11. 마이크로디그리 또는 프락시스디그리 이수증명서
 - 12. EPiC졸업요건취득증명서
 - ② 증명서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한다.
 - ③ 증명서는 자동증명발급기, 민원우편, 팩스민원,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 ④ 졸업예정증명서는 최종학기 재학생으로서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 소요학점 이상의 이수가 가능한 자에 대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6장 졸업

제1절 졸업사정 등

- 제65조(졸업요건 및 심사기준) ① 학칙 제65조에 따른 졸업에 필요한 취득학점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졸업학점: 130학점(3학년 편입생은 65학점) 이상(단, 건축학전공의 신입생은 160학점 이상, 3학년 편입생은 95학점 이상)
 - 2. 전공학점: 70학점(3학년 편입생은 32학점) 이상
 - 3. 교양학점: 계열별 교양 요구학점(3학년 편입생은 제외) 이상
 - ② 졸업심사는 8개 학기(건축학전공은 10개 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를 심사한다.
 - 1. 졸업 및 전공이수 요구학점의 충족 여부
 - 2. 교양 및 전공 필수교과목 이수 여부
 - 3. 계열별 교양 요구학점의 충족 여부
 - 4. 복수(부)전공자의 복수(부)전공교과목 이수 및 요구학점 충족 여부
 - 5. 재학연한의 초과 여부
 - 6. 졸업자격인증 취득 여부
 - 7.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과목 이수 여부
 - 8. 그 밖에 교육과정 이수 기준에 관한 사항
 -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요구학점은 별표 3과 같으며, 그 밖의계열별 교양 요구학점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66조(졸업학점 미인정 기준) ① 제65조제2항제7호에 따른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동일교과목을 중복 이수한 학점

- 2. 편입학생 중 저학년(1, 2학년) 교과목 및 선이수 지정 교과목을 이수한 학점
- 3. 타 학과(부)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공교과목 중 매 학기 주간 입학생은 9학점 을 초과하는 학점
- 4. 교양선택 체육영역교과를 6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
- 5. 졸업시험대체교과목으로 지정된 교양교과목
- 6. Co-op 프로젝트 (1)·(2)·(3)·(4)
- 7. 국내 학점교류 협약대학과 K-MOOC에서 매 학기 6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 (단, K-MOOC인 경우 총 9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개정 2023, 5, 12.)
-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 1. 편입학생이 입학 후 구 교육과정 교과목을 재수강하였으나 교육과정 개편으로 신 교육과정에서 저학년(1, 2학년)으로 된 경우와 학과(부)장이 교육과정 운영상 특별한 사유로 저학년(1, 2학년) 교과목을 졸업학점 교과목으로 인정하는 경우
- 2. 복수(부)전공 이수 학생의 경우
- 3. 연계융합전공 또는 학생설계전공 교육과정 이수 학생의 경우
- 4. 공동운영 교육과정 이수 학생의 경우
- 5. 타 학과(부) 전공 인정 교과목 이수 학생의 경우
- 제67조(조기졸업) ① 학칙 제69조에 따라 조기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종강일 이후 별지 제9호서식의 조기졸업신청서를 제출하여 학위 수여 30일 이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 1. 학칙 제88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 2. 학칙 제63조에 따라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 제68조(학사학위취득 유예) ① 학칙 제67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등록하여 재학한 기간이 재학연한에 미달하는 자는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다.(다만, 조기졸업신청자는 제외)
 -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절 졸업자격인증

- 제69조(졸업자격인증 취득) ① 졸업자격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졸업전공시험(복수전공 포함) 합격
 - 2. 대학에서 지정한 졸업요건(이하 "EPiC 졸업요건"이라 한다) 700점 이상 취득.(단, 편입생은 350점 이상 취득)
 - ② 제1항에 따른 졸업전공시험 및 EPiC 졸업요건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70조(기타사항) ① 졸업자격인증의 시행에 있어서 학칙과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② 재입학자의 재입학 전 졸업종합시험 합격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7장 보칙

제71조(의견수렴) 성적 관리를 포함하여 학생의 권리·의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에서 학생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부칙(제705호, 2022.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디스커버리학기 성적평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8조제2항은 2022학년도 하계방학 기간에 운영한 디스커버리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절학기 수강 현장실습 등 교과목의 졸업학점 인정 경과조치) 제29조제1항은 202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수강자부터 적용하며, 2022학년도 동계 및 2023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수강자의 경우 졸업사정 전에 성적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학기 수료 또는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

제4조(졸업자격인증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65조제2항제6호 및 제69조는 2021 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편입생의 경우 2023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하되, 그 이전 입학생(편입생 포함)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계열별 교양학점 인정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65조제1항제3호, 제2항제3호, 제3항에서 '계열별 교양 요구학점'은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제736호, 2023. 2.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47호, 2023. 5.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졸업학점 미인정 기준에 따른 경과조치) 제66조제1항제7호는 2023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부터 적용하되, 이 규정 시행 당시 K-MOOC으로 총 9학점을 초 과하여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학생은 제66조제1항제7호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학년도 1학기까지 이수한 학점을 총 12학점 범위내에서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

교시별 수업시간표

- ,1	시	간
교 시	50분 수업	75분 수업
제0교시	08:00 ~ 08:50	
제1교시	09:00 ~ 09:50	
제2교시	10:00 ~ 10:50	
제3교시	11:00 ~ 11:50	
제4교시	12:00 ~ 12:50	10:00 ~ 11:15
제5교시	13:00 ~ 13:50	11:30 ~ 12:45
제6교시	14:00 ~ 14:50	13:00 ~ 14:15
제7교시	15:00 ~ 15:50	14:30 ~ 15:45
제8교시	$16:00 \sim 16:50$	18:30 ~ 19:45
제9교시	17:00 ~ 17:50	20:00 ~ 21:15
제10교시	18:00 ~ 18:50	21:30 ~ 22:45
제11교시	$19:00 \sim 19:50$	
제12교시	20:00 ~ 20:50	
제13교시	21:00 ~ 21:50	
제14교시	22:00 ~ 22:50	

성적평점 환산 기준표

평점	환산점	평점	환산점	평점	환산점	평점	환산점	평점	환산점	평점	환산점	평점	환산점
4.50	100.0	4.00	94.3	3.50	88.6	3.00	82.9	2.50	77.1	2.00	71.4	1.50	65.7
4.49	99.9	3.99	94.2	3.49	88.5	2.99	82.7	2.49	77.0	1.99	71.3	1.49	65.6
4.48	99.8	3.98	94.1	3.48	88.3	2.98	82.6	2.48	76.9	1.98	71.2	1.48	65.5
4.47	99.7	3.97	93.9	3.47	88.2	2.97	82.5	2.47	76.8	1.97	71.1	1.47	65.4
4.46	99.5	3.96	93.8	3.46	88.1	2.96	82.4	2.46	76.7	1.96	71.0	1.46	65.3
4.45	99.4	3.95	93.7	3.45	88.0	2.95	82.3	2.45	76.6	1.95	70.9	1.45	65.1
4.44	99.3	3.94	93.6	3.44	87.9	2.94	82.2	2.44	76.5	1.94	70.7	1.44	65.0
4.43	99.2	3.93	93.5	3.43	87.8	2.93	82.1	2.43	76.3	1.93	70.6	1.43	64.9
4.42	99.1	3.92	93.4	3.42	87.7	2.92	81.9	2.42	76.2	1.92	70.5	1.42	64.8
4.41	99.0	3.91	93.3	3.41	87.5	2.91	81.8	2.41	76.1	1.91	70.4	1.41	64.7
4.40	98.9	3.90	93.1	3.40	87.4	2.90	81.7	2.40	76.0	1.90	70.3	1.40	64.6
4.39	98.7	3.89	93.0	3.39	87.3	2.89	81.6	2.39	75.9	1.89	70.2	1.39	64.5
4.38	98.6	3.88	92.9	3.38	87.2	2.88	81.5	2.38	75.8	1.88	70.1	1.38	64.3
4.37	98.5	3.87	92.8	3.37	87.1	2.87	81.4	2.37	75.7	1.87	69.9	1.37	64.2
4.36	98.4	3.86	92.7	3.36	87.0	2.86	81.3	2.36	75.5	1.86	69.8	1.36	64.1
4.35	98.3	3.85	92.6	3.35	86.9	2.85	81.1	2.35	75.4	1.85	69.7	1.35	64.0
4.34	98.2	3.84	92.5	3.34	86.7	2.84	81.0	2.34	75.3	1.84	69.6	1.34	63.9
4.33	98.1	3.83	92.3	3.33	86.6	2.83	80.9	2.33	75.2	1.83	69.5	1.33	63.8
4.32	97.9	3.82	92.2	3.32	86.5	2.82	80.8	2.32	75.1	1.82	69.4	1.32	63.7
4.31	97.8	3.81	92.1	3.31	86.4	2.81	80.7	2.31	75.0	1.81	69.3	1.31	63.5
4.30	97.7	3.80	92.0	3.30	86.3	2.80	80.6	2.30	74.9	1.80	69.1	1.30	63.4
4.29	97.6	3.79	91.9	3.29	86.2	2.79	80.5	2.29	74.7	1.79	69.0	1.29	63.3
4.28	97.5	3.78	91.8	3.28	86.1	2.78	80.3	2.28	74.6	1.78	68.9	1.28	63.2
4.17	96.2	3.67	90.5	3.17	84.8	2.67	79.1	2.17	73.4	1.67	67.7	1.17	61.9
4.16	96.1	3.66	90.4	3.16	84.7	2.66	79.0	2.16	73.3	1.66	67.5	1.16	61.8
4.15	96.0	3.65	90.3	3.15	84.6	2.65	78.9	2.15	73.1	1.65	67.4	1.15	61.7
4.14	95.9	3.64	90.2	3.14	84.5	2.64	78.7	2.14	73.0	1.64	67.3	1.14	61.6
4.13	95.8	3.63	90.1	3.13	84.3	2.63	78.6	2.13	72.9	1.63	67.2	1.13	61.5
4.12	95.7	3.62	89.9	3.12	84.2	2.62	78.5	2.12	72.8	1.62	67.1	1.12	61.4
4.11	95.5	3.61	89.8	3.11	84.1	2.61	78.4	2.11	72.7	1.61	67.0	1.11	61.3
4.10	95.4	3.60	89.7	3.10	84.0	2.60	78.3	2.10	72.6	1.60	66.9	1.10	61.1
4.09	95.3	3.59	89.6	3.09	83.9	2.59	78.2	2.09	72.5	1.59	66.7	1.09	61.0
4.08	95.2	3.58	89.5	3.08	83.8	2.58	78.1	2.08	72.3	1.58	66.6	1.08	60.9
4.07	95.1	3.57	89.4	3.07	83.7	2.57	77.9	2.07	72.2	1.57	66.5	1.07	60.8
4.05	94.9	3.55	89.1	3.05	83.4	2.55	77.7	2.05	72.0	1.55	66.3	1.05	60.6
4.04	94.7	3.54	89.0	3.04	83.3	2.54	77.6	2.04	71.9	1.54	66.2	1.04	60.5
4.03	94.6	3.53	88.9	3.03	83.2	2.53	77.5	2.03	71.8	1.53	66.1	1.03	60.3
4.02	94.5	3.52	88.8	3.02	83.1	2.52	77.4	2.02	71.7	1.52	65.9	1.02	60.2
4.01	94.4	3.51	88.7	3.01	83.0	2.51	77.3	2.01	71.5	1.51	65.8	1.01	60.1
												1.00	60.0

^{*} 환산식 : 60 + [(평점평균-1) * 40/3.5] = 백분위 점수

[별표 3] (제65조제3항 관련) (개정 2023. 2. 20.)

졸업(전공 포함) 및 교양 요구학점표

	교양 최소	노 이수학점	전공	졸업
구분	교양필수*	교양(선택+필수)	이수학점 (선택+필수)	취득학점
인문사회계열	19	31	70	130
자연과학 I 계열	31	34	70	130
자연과학II계열	25	34	70	130
조형계열	19	31	70	130
스포츠계열	19	34	70	130
공학 I 계열	31	34	70	130
공학 II 계열	25	34	70	130

[※] 교양 최소 이수학점은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 해외 대학 복수학위 학과(ITM전공, MSDE학과 등)는 제외함

^{*} 교양필수 구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개선에 관한 규정」에서 정함

[별표 4] (제65조제2항 관련)

졸업심사 합격기준

가. 졸업종합시험 합격기준(2020학년도 신입학 및 2022학년도 편입학 학생까지 적용)

						합격기			
교		시험괴	. 모	만 점	2012년 ~ 2020학년도 입학생(2022학년도 편입생)				
과		71644		2.6	영어영문학과, 경영학과		그 외학과		
		(국	TOEIC ·제교류처 IOEIC 포함)	990	650점 이상		600점 이상		
		TOEIC Spe: 모의TOEIC	aking (국제교류처 Speaking 포함)	200	120점이상		110점이상		
			OPIc ·제교류처 OPIc 포함)	AL		Ⅱ 이정	}		
		TC	EFL(iBT)	120	68점 이상		62점 이상		
		TC	DEFL ITP	677	507점 이상		487점 이상		
	영어	TEPS	'18.4.7.이전 시행	990	539점 이상		483점 이상		
	0 91	1EPS	'18.5.12.이후 시행	600	291점 이상		259점 이상		
		IELTS		Band 9	Band 5				
亚					영어영문학과 그 외학		그 외학과		
샹		대체교과목			9학점 이상 이수 학생 - 영어쓰기의기초 영어 영어말하기의기초 - 선택과목 3학점 (졸업학점 인정)		6학점 이상 이수 학생 (영어쓰기의기축 영어읽기의기초, 영어말하기의기초)		
					〈이수대상〉이수희망	학생			
					(수료생) 해당 입학년도 기초, 영어말하기의기		영어쓰기의기초, 영어읽기의		
	중국어		신HSK	6급(300점)		4급 230점	이상		
	일본어		JLPT	N1급		N3급 이	상		
	된는이		JPT	990	50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한국어 대체교과목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중급)	이상			
			체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자(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1, 2) * 이수대상 : 외국인 재학생				
전고		전공교과与			만점의 40%(각 과목당 40점) 이상이며, 득점의 60%(240점) 이상인 자				
공	논문,	실험실습, 실	旦기(작품,설계)	각 학과 심] 사기준에 의해 합격, -	불합격 판	정		

^{*} 자국어를 외국어교과 응시과목으로 접수할 수 없음.

- 나. 졸업자격인증 합격 기준(2021학년도 신입학 및 2023학년도 편입학 학생부터 적용)
- 각 학과(부) 지정 졸업전공시험 합격 및 EPiC졸업요건 700점 이상(편입생은 350점 이상) 취득

학습구분 변경승인 신청서(전체교과목 변경)

학 과(부)	학 년	연락처 (전화번호)
학 번	성 명	지도교수 학자 또는 학과(부)장
변경희망 학습구분	 야간에서 주간으로 변경 주간에서 야간으로 변경 (입학당시 야간학적 학생에 한함) 	확 인
변경사유	야간과정이 폐지된 경우	
지도교수 의 견		

위와 같이 학습구분(전체교과목)을 변경 수강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귀하

붙임: 학점인정 교과목 현황

[별지 제2호서식] (제43조제1항 관련)

군입대 휴학생 성적 인정원

학 과(부)	학 번	화	학장 또는 학과(부)장
성 명	연락처 (전화번호)	인	

위 신청인은 학년도 제 학기 총수업일수 2/3선 이후에 군입대 휴학하게된 학생으로서 본인이 원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휴학전의 평가 평균 성적으로 당해학기의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대일자 : 년 월 일

2. 성적인정 교과목 내역

순번	교과목명	교과목 코드번호	강 좌 번 호	교과목 담당교수	담당교수 확인 (인)
1					
2					
3					
4					
5					
6					
7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	퇴 원				
학과(부) :	학 번:				
성 명:	생년월일 :				
현 주 소 :					
연 락 처 : (전화번호)					
등록금 반환청구 계좌*: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등록금 반환 신청자에 한하여 기재 자퇴사유 : 타교진학 □, 전공 부적합 □, 유학 □, 경제사정 □, 취·창업 □ 질병 □, 기타() 의 같은 사유로 자퇴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ਜ <u>ੰ</u>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첨부 통장 사본 1부(등록금 반환 신청자)					
「최근(최종) 등록 학기」에 받은 국가장학금이 있습니까? ※ "예"를 선택한 학생은 학생지원과(장학복지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오"를 선택한 학생은 학생지원과 방문 불필요) 아니오 및 학					

[※] 자퇴를 신청하려는 학생은 학과(부)장과 상담 후 학사지원과로 방문하여 자퇴원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근(최종) 등록학기 국가장학금을 수령한 학생은 학생지원과에서 장학금 반납 절차에 대하여 먼저 안내를 받으시고, 도서 대출자는 반납처리를 선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서식] (제53조제1항 관련)

재입학 신청원

제적당시소속	학과(부) · 전공	학년 학번	:
성 명		학습구분	주간, 야간
재적기간		연 락 처 (전화번호)	
이수학점	학점	이 수 학 기 (계절학기 미포함)	학기
제적사유			

(사유: 미복학제적, 미등록제적, 자퇴, 학사제적, 기타제적)

상기 본인은 귀 대학교에 재입학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제58조제2항 관련)

전과(부) 허가원

소 속	대학	학과(부) · 전	선공 학년
학 번		학습구분	주간, 야간
성 별	남, 여	연 락 처 (전화번호)	

전과(부)희망학과	대학	학과(부) · 전공	학년
학습구분	주간, 야간		
이수학점		총 평점평균	
전과(부)사유			

위와 같이 전과(부)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학과(부)장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서식] (제60조 관련)

학점인정 교과목 현황

학과(부): 학년: 구 학번: 성명:

회의일시: 년 월 일 시

학과(부) 회의 확인()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학:	과(부)장
학년도	이 수	취 득	이 전	학 점	이 수		인 정	학 점		그레모뀦호
/ 학기	구 분	과목명	학점	성적	구 분	대치교	과목명	학점	성적	교과목번호
취득 교	과목수		취득 학점		인정 교	2과목수		인정	학점	

▶ 적용 교육과정 : 학년도 교육과정 학년 학기부터 적용단, 아래지정교과목은 필히 이수하여야 함.(지정교과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지정 교과목명 :

학점계: 학점

열람 확인 : 신 학번 성명 (서명 또는 인)

- ※ 1. 학년도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교과목 번호 및 학점을 기재하십시오.
 - 2. 학기별 한 장씩 사용 하십시오.
 - 3. F학점도 기재하십시오.

학적부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해당사항만 기재)

	학 과 (부)				학 년		학 번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전화번호)							
			구					
71	성 명	국문	신					
정	\ \ \ \ \ \ \ \ \ \ \ \ \ \ \ \ \ \ \	한문	구					
정		안군	신					
 내	내 생년월일		구					
			신					
역	역 주민등록번호		7					
	(변경시)		신					
정정사유								

위와 같이 학적부 기재사항을 정정 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귀하

※ 유의사항

- 1. 성명 정정, 주민등록번호 및 생년월일 정정은 변경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1통을 첨부할 것.
- 2. 영문성명 및 주소 정정은 인터넷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정정할 것

[별지 제8호서식] (제65조 관련)

외국어 졸업종합시험 심사표

소 속	대학	학과(부)	· 전공	학년	학	번	
성 명		학습구분	주간,	야간	성	별	남, 여
연 락 처 (전화번호)							
장애내역							

외국어 능력 심사 결과						
합격 여부	합격 🗆	불합격 🗌				

첨부 장애증명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평 가 자 : (서명 또는 인)

[※] 평가요령: 장애학생의 장애 형태·정도를 고려하여 (대면) 평가 또는 본교 재학 중 이수한 외국어 교과의 학업성취도 등 고려하여 평가 실시

[별지 제9호서식] (제67조제1항 관련)

조기졸업 승인 신청서

단과대학	학과(부)	학	번	
성 명	생년월일	연 ^리 (전화	† 처 번호)	

상기 본인은 우리대학 학칙 제69조 및 **학사관리규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기졸업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학기 수	취득학점	평점평균	졸업시험(전공) 합격 여부	EPIC 졸업요건 [*] 충족 여부
개 학기				

* 20학번 신입생 및 22학번 편입생까지는 공인외국어성적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지도교수	학과(부)장	학 장
경			
유			